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된 바, 법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실시 예외 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9.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
시설 등을 증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한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또는 국가 정책적
으로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 및 각 기준별 세부내용과
가중치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관련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연구회가 지정한 기관

④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8의4(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u> <u>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건물 신축 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u> <u>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경우</u> <u>4. 그 밖에 긴급한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 <u>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u>

사업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 및 각 기준별 세부내용과 가중치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관련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연구회가 지정한 기관

④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⑤ 그 밖에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연 락 처	(044) 202 - 4755